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장도매인 표준송품장 의무 사용 안내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농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표준송품장 사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시장도매인 여러분께서는 출하자가 표준송품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2021. 1. 1. ~ (준비기간 : 2020. 12. 1. ~ 31.)

나. 세부내용

- 1) 출하자와 거래 시 표준송품장* 의무 사용(양식은 붙임 참조)
- 2) 원시송품장 사본 거래신고소 제출: 수정사항 반영 후 복사 및 제출. 다만 상자 겉면, 봉투 등 비규격 용지에 출하내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표준송품장에 이기 후 제출
* 출하자 자체 표준송품장 양식은 출하자 정보(출하자 신고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 및 품목, 규격, 단량, 등급, 수량, 금액 등 필수 기재 내역에 따라 판단

다. 표준송품장 사용 관련 교육 : 12월 중 실시 예정(코로나19로 소규모 개별 교육)

3. 공사에서는 표준송품장 의무 사용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송품장 양식을 제작하여 배부(법인당 1,000부)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표준송품장 사용 비율을 점검하여 포상 추천, 업무검사 면제대상 추진 등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표준송품장 양식(안) 1부. 끝.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수신자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시장도매인(60개소)

차장

이계진

팀장

최영규

강서지사장

전결 12/01

노계호

협조자 P/L

송태섭

시행 유통관리팀-4152 (2020.12.01.) 접수

()

우 04515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로 40

/ www.garak.co.kr

전화 02-2640-6061 전송 02-2640-6045 / latespring@garak.co.kr

/ 공개